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培·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운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전문인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님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익소송센터(담당 : 김정선, 이정운 : 796-8364)

제 목 지옥전철 초래한 대한민국 상대로 3,600만원 손배청구 소송 보도의件

날 짜 1996. 3. 28. (총 14쪽)

보도자료

지옥전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 지옥전철 초래한 대한민국 상대로 3,600만원 손배청구 소송 -

소장 접수 일시 : 1996. 3. 28. 목 오전 11:00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吳在植) 공익소송센터(소장 安泳燾)는 28일 오전 11시 국가를 상대로 경인선의 상습적인 저연운행, 잦은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2. 본 소송의 원고들은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 수원, 부천 등지에 거주하면서 국철 1호선인 경인선, 경수선을 이용하여 서울시 소재 직장에 출퇴근하는 시민들 6명(별첨자료, 원고명단 참조)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각 6백만원씩 총 3천6백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3. 본 소송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동법 제5조 1항(별첨자료, 소장 참조)에 근거하여, 국철 1호선을 건설,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주체인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안우만)을 상대로 공공시설인 국철 1호선을 불완전하게 유지, 보수,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의 물적, 사회적, 기능적 결함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초래된 열차의 지연 또는 불통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본 소송은 공공시설의 운영주체인 국가와 이용자인 시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최초의 소송이다.
4.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본 소송과 함께 서울역 앞 항의시위(4월 3일일 12:00시) 및 지하철 불편 해소를 위한 시민공청회(4월 3일 오후 7:00) 등 지속적으로 시민의 권리 되찾기를 위한 제도개혁운동, 시민고발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 별첨자료 ■

1. 소송의 개요 / 2. 소송의 의미 / 3. 소장

1. 소송의 개요

1. 원고명단

이름	나이	주 소
연제호(延濟浩)	3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232
이승희	29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방극연	29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최형욱	2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박지선(朴志璇)	2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박영란	24	인천광역시 북구 부개동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국철 1호선은 [철도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가가 자기의 경제적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 경영하는 국영사업이다. 즉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반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시설이다. 전철의 제반시설과 철도공무원의 직무로 이루어진 종합적인 물적 인적 시설을 이용하여 시민들은 [출퇴근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전철 1호선을 이용한 출퇴근이 운전정리 미숙 등으로 인해 자주 지연되고 있다(소장 국철1호선의 사고 예 참조). 또한 유지, 보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선로에 결함이 생기거나 전기공급선의 노후 정전사태가 빚어지기도 한다. 그 결과 전철의 운행 자체가 장시간 불통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더구나 이러한 지연이나 불통에 대해 그때그때 안내방송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특히 인천,부천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받고 있다. 이러한 전철의 지연운행이나 장시간의 불통사태에 대해서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그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의 법률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 2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동법 제 5조 1항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피 또는 과리에 하자가 위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철 1호선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팔리운영주체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열차의 지연 또는 불통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공공시설인 국철 1호선을 유지, 보수, 관리하면서 그 시설의 구조, 용도, 장소적 환경,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이를 불완전하게 유지, 보수,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의 물적, 사회적, 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초래된 열차의 지연 또는 불통에 대하여,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소송의 의미

1. 국가의 공공서비스 제공은 시민의 권리이다.

본 소송은 공공시설의 이용관계에서 공공시설의 운영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용자인 시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최초의 소송이다. 국민들에 의해 구성된 국가는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본 소송은 시민들이 국가의 공공 서비스 제공을 국가의 [은혜]가 아니라 시민들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다.

2. 본 소송은 국철 1호선을 이용하는 2백 30만 인천시민들의 법률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공익소송이다.

본 소송은 해당 원고 몇몇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제한돼서는 안된다. 본 소송은 그 재판 결과가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에 있는 다수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켜준다는 점에서 일반 민형사소송과는 다른 일종의 공익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재판은 행정이나 제도와 관련해 정책형성 기능을 갖는다. 공익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 관행에 대한 무효선언을 통해 새로운 입법을 촉구하기도 하고 법적 기준자체를 변경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바꾸도록 강제하게 된다. 이는 곧 사법부가 행정부나 입법부를 대신해 정책형성의 선도적 구실을 맡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설혹 실질적인 이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생기는 공방과 법원의 판단은 쟁점이 되는 사건에 대한 정책결정과 제도개혁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각종 소송은 현행 사법제도의 문제 때문에 개인차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현재도 특정인이 상징적 대표자로서 소송을 제기해 현행법상 채택되자 않고 있는 대표소송이나 단체소송제도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공익소송의 취지와 의의가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현행 소송제도의 개혁을 통한 '대표소송' 혹은 '단체소송' 제도가 마련되어 동일한 사건의 반복으로 인한 사법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의 공익소송은 우리 나라에서도 1987년 망원동 수해손해배상소송, 1992년 백화점 사기세일 소송, 1993년 박종칠 사건 진상은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이 있었으며 사회복지분야에서도 1994년 심창섭, 이금순 노인 부부가 생활보호법의 생활보호급여의 적정기준문제에 대하여 위헌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참여연대는 사회복지과 관련된 공익소송으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취소 청구소송', '지역의료보험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고, 이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의료보험연합회장의 직권남용 고발건'은 정부당국에서 제정했던 의료보험적립금 중 의료기관 자금조성관리 규정을 취소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국민연금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공익소송을 하나의 사회운동역역으로 개척해 왔다.

소 장

원 고 별지목록 기재 참조

원고들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박원순)
2. 덕원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박성호)
3. 변호사 이석연

피 고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안우만

손해배상(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금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짚을 때까지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모두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 수원, 부천 등지에 거주하면서 국철 1호선인 경인선, 경수선을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에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한편 피고는 궁공의 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경인선, 경수선을 운영하고 있으며(철도법 제1조 참조), 특히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지역 도시교통 권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경인선, 경수선으로 이루어진 국철 1호선을 건설, 운영하고 있습니다(도시철도법 제1조, 제2조 1

항 1호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는 국철 1호선의 관리운영주체로서,

피고 산하 철도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들은 국철 1호선의 최초 출발역에서의 배차간격이 시간대별 이용승객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와 같이 규정된 배차간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는 국철 1호선이 철도법에 의하여 부설된 경인선, 경수선과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건설, 운영된 도시철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동포역, 신도림역, 구로역, 오류역 등에서는 국철 1호선을 운행하는 열차 이외에도 기타 각종의 화물열차 등이 수시로 운행하고 있으므로 그 선로 및 궤도, 국철 1호선의 전력공급선 또는 운행열차의 결함상태 등을 수시로 유지, 보수, 관리함으로써 선로나 궤도의 손상, 전력공급선의 단절 또는 열차의 탈선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④ 1991. 2. 21. 07:23경 국철 1호선 청량리역 구내에서 인천을 출발하여 성북 방면으로 운행중이던 피고 산하 철도청 소속 케이 16호 전동열차가 고장을 일으켜 멈춰서는 사고로 뒤따라 운행하던 전동열차들이 2시간 동안 운행중단되었습니다.

④ 위 같은날 07:40경 국철 1호선 동대문역 부근에서 인천을 출발하여 성북 방면으로 운행중이던 철도청 소속 케이 20호 전동열차가 동대문역 진입 1백미터 전방에서 고장을 일으켜 멈춰서는 사고로 30여분간 운행중단되었습니다.

④ 위 같은날 08:21경 국철 1호선 청량리역과 회기역 사이에서 인천을 출발하여 의정부 방면으로 운행중이던 철도청 소속 케이 22호 전동열차가 고장을 일으켜 멈춰서는 사고로 일시 운행중단되었습니다.

④ 위 같은날 09:20경 국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회기역쪽으로 3백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의정부역을 출발하여 인천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철도청 소속 케이 73호 전동차의 6번째 객차 전류전환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의정부에서 청량리 역으로 들어오는 전동열차의 운행이 오전 한때 중단되었으며, 이 사고로 승객 1천 5백여명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같은날 국철 1호선에서는 위와 같은 사고 이외에도 크고 작은 여러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같은날 청량리-성북역 구간의 5건을 비롯하여 서울역, 동대문, 신설동, 종로3가역 등 서울시내에서 9건이 발생하고 수원, 인천, 제물포역에서도 1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전동열차의 운행중단 사태가 속출하여 국철 1호선 전구간에서 10여만명의 출근길 시민들이 전철을 이용하지 못하고 버스나 택시 등을 갈아타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2) 같은해 2. 28. 11:4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경인선 오류역 구내에서 의정부를 출발하여 인천으로 운행중이던 철도청 소속 소외 김용규가 운전하는 제279호 전동열차 10량의 모든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고장을 일으켜서 30여분 동안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운행중단에 대한 안내방송도 하지 않았는 바, 이로 인하여 최근 길 시민 3천여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3) 같은해 4. 18. 07:45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 경인선 온수역 구내에서 인천에서 의정부로 가던 전동차의 공기압력장치의 고장으로 출입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여 아침 출근길 전철운행이 30여분 동안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출근길 시민 4천여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4) 같은해 10. 30. 20:38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경인선 개봉역 구내에서 피고 산하 철도청 소속 기관사인 소외 천정웅은 성북역을 출발하여 주안역으로 향하는 케이 323호 전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는 바, 당시 전방 선로에 진입금지신호기가 켜져있는 것을 보고도 자동제어장치가 작동되는 자동운행장치를 수동으로 바꾸고 시속 65킬로미터의 속도로 계속 운행하다가 전방 150미터 지점에 출입문 고장으로 정차해있던 서울지하철공사 소속의 에스 243 전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제동결기에 미치지 못하고 추돌하여 두 전동차에 타고있던 승객 64명이 부상하고 경인선 국철 1호선이 같은날 22:25경까지 1시간 50분 동안 불통되었습니다.

(5) 같은해 11. 1. 00:10경 경인선 오류역 구내에서 청량리역을 출발하여 인천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피고 산하 철도청 소속 기관사인 소외 김용규가 운전하는 제279호 전동열차가 출입문 작동장치 고장으로 열차가 자연운행하였습니다.

(6) 같은해 12. 17(92학년도 전기대 학력고사 시험일). 05:54경 서울 구로구 시흥 1동 경수선 시흥역 남쪽 1백50미터 지점에서 2만 2천 9백볼트 한전고압선이 끊어지면서 전철의 전력공급선에 떨어져 함선되어 전력공급선 18개 중 7개가 단

절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구로-수원간 경수전철 상하행선 운행이 2시간 20여분 동안 전면 불통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전철을 이용하던 수험생 5천여명이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느라 시흥, 구로, 안양, 수원역 등지에서 큰 혼잡이 빚어졌으며, 시흥역의 경우에는 수험생 1천여명이 전철에서 내려 역 밖으로 달아나거나 느리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 일대 혼란을 빚었고, 출근길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7) 같은해 12. 20. 06:54경 국철 1호선 종로 5가역 구내에서 성북역을 출발하여 인천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피고 산하 철도청 소속 기관사인 소외 나복수가 운전하는 제39호 전동열차의 집전기에서 강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집전상판이 떨어져나가 열차운행이 50여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8) 1992. 4. 3. 21:1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 7동 국철 1호선 대방역에서 청량리 역을 출발하여 수원으로 운행중이던 에스 535호 전동차가 역구내로 진입하는 순간 고압선에 불꽃이 튀면서 고압선을 받치고 있던 애자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구내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소외 김준희가 깨진 애자조각에 발목을 다쳤으며 인천과 수원으로 가는 하행선 전동차가 20분간 지연 운행하였습니다.

(9) 1992. 5. 13. 아침 출근시간대에 국철 1호선 영등포역 구내 신도림역 방향 1킬로미터 지점에서 전력공급선이 놓어지면서 전기가 끊기는 바람에 1시간 남짓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10) 1992. 5. 15. 08:10경 경인선 부천역과 중동역 사이에 있는 중동고가보도 육교밑에서 의정부역을 출발하여 주안역으로 운행하던 피고 산하 철도청 소속 케이 307호 전동열차가 위 육교밑을 통과하는 도중 끊어진 전차선이 전동차의 집전 장치에 엉키면서 전력공급이 중단되어 08:10경부터 11:00까지 2시간 50분 동안 경인선 부천-인천간 상하행선 운행이 모두 중단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서울과 인천으로 출근하는 10만여명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특히 출근을 위해 부천, 부평, 주안, 동인천역 등에 나와있던 시민들이 버스와 택시 등을 타기위해 역 주변 시내시외 버스정류장 등지로 몰리는 바람에 역주변 일대가 큰 교통혼잡을 빚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11) 같은해 7. 23. 08:35경 국철 1호선 신이문역과 석계역 사이에서 철도청 소속 케이 28호 전동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1시간 남짓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12) 같은해 8. 4. 08:08경 국철 1호선 회기역쪽 하행선 1백83미터 지점에서 철도청 소속 케이 210호 전동차 10량이 고장으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하여 종장비를 동원하여 이를 견인하였으며, 같은날 15:00경 국철 1호선 서울역 구내에서 선로궤도가 파손되어 전동차 운행이 40여분 중단되었습니다.

(13) 같은해 8. 29. 15:10경 경인선 온수역 기점 50미터 지점에서 선로이음새가 무더운 날씨로 늘어나는 바람에 선로가 휘어 인천행 하행선 전동차 운행이 1시간 20분 동안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8분 간격으로 뒤따르던 10여대의 전동차가 연착하거나 상행선의 단선을 이용하여 제한운행하는 바람에 퇴근길 시민 2만여명이 장시간 대기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14) 같은해 9. 1. 08:08경 서울 영등포구 국철 1호선 영등포역 구내에서 선로변환장치와 신호기장치의 전원이 갑자기 끊기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원을 출발하여 청량리로 운행중이던 철도청 소속 케이 422호 전동열차 등 19개 전동열차가 22분간 지연 운행하였습니다.

(15) 1993. 10. 18. 05:30경 서울 용산구 국철 1호선 남영역과 서울역 사이에서 구로역을 출발하여 의정부으로 운행중이던 철도청 소속 소외 쇠선영이 운전하는 케이 802호 전동차가 서울역 남쪽 7백 20미터 지점에 이르러 선로변환장치 고장으로 선로가 제대로 연결되어있지 않은 지점을 통과하다가 맨앞 전동차 두 번째 바퀴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1시간여 동안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국철 1호선 20개 전동차의 운행이 차례로 중단되어 7천여명의 출근시민들이 전철에서 내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16) 같은해 11. 6. 15:37경 국철 1호선 용산역 구내에서 성북역을 출발하여 인천으로 운행중이던 철도청 소속 소외 이정건이 운전하는 케이 175호 전동차가 주행신호등 통제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는 바람에 16:10경까지 정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인천-의정부역 전구간 하행선이 서행하는 등 혼잡을 빚어 승객 4백여명이 용산역 등에게 환불소동을 빚었고 국철 1호선 전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17) 1994. 10. 7. 08:10경 경인선 오류역 구내에서 전동차의 전력공급선을 떠받치는 지지선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구로-부평간 상행선 운행이 1시간 13분간 불통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인천발 의정부행 상행선 25개의 전동차 운행이 연달아 지연되어 출근길 시민 3만여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18) 같은해 10. 28. 12:4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국철 1호선 제기역 구내에서 인천을 출발하여 의정부로 운행중이던 철도청 소속 소외 정종명이 운전하는 케이 114호 전동차의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차량 밑에서 연기가 치솟아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의정부행 전동차의 운행이 10여분간 중단되었습니다.

(19) 같은해 11. 13. 04:51경 경인선 부천-부평역간의 급전선이 합선으로 끊어져서 05:40분 인천을 출발하여 서울로 운행중이던 철도청 소속 2호 전동차를 비롯하여 07:01경 인천발 의정부행 전동차 등 모두 13편의 열차 운행 중에서 첫열차 등 3편의 전동차는 아예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나머지 열차는 부천-구로역 구간의 운행이 중단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부천-구로역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시민들이 버스 등으로 갈아타느라 큰 불편을 겪었으며, 또 전철고장을 모르고 부천-구로역 구간의 6개역에 나왔던 시민 3천여명은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20) 같은해 11. 18. 06:4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국철 1호선 동대문역 구내에서 성북을 출발하여 인천으로 운행중이던 전동차가 기관고장을 일으켜 15분간 정차하였습니다.

(21) 같은해 11. 28. 22:30경 경인선 개봉역 구내에서 철도청의 선로보수하청업체인 궤도공사 소속 일부 20여명이 원래 전동차 운행중단 시간인 다음날 29. 00:30경부터 선로보수작업의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동차가 운행중인 시간에 하행선 선로의 안전핀을 60미터 가량 제거하는 등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여 전동차 7편이 이 구간을 서행하는 등 지연운행하였습니다.

(22) 같은해 12. 13. 07:10경 국철 1호선 영등포역에서 대방역 방향으로 1킬로미터 지점 상행선에서 선로전환기의 침목고정용 볼트가 떨어져 나가 신호기가 작동을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여 3시간여 동안 전동차 운행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출근시간대 2분 30초 간격으로 운행되던 전동차가 5분에 한편씩 운행되는 바람에 승객 15만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23) 위 같은날 08:12경 국철 1호선 서울역에서 의정부를 출발하여 구로역으로 운행중이던 철도청 소속 은희태가 운전하는 케이 801호 전동차가 직교류 전환장치의 고장으로 10분간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승객 1천여명은 다른 전동차로 갈아탔으며, 다른 역에서도 운행이 10여분씩 지연되었습니다.

(24) 같은해 12. 15(고입수험일). 06:53경 경인선 인천역과 동인천역 사이에서 19가닥으로 이루어진 전력공급선 중 3가닥이 재질 자체의 결함으로 심하게 그을

리는 등 합선을 일으키면서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부천-인천간 하행선의 전동차 운행이 1시간 반 동안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인천-부평간 상하행선 전동차가 상행선만으로 왕복운행하느라 운행간격이 평소보다 배로 늘어나는 바람에 이 구간 8개역을 이용하는 고입수험생 및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25) 같은해 12. 16. 17:20경 국철1호선 구로역 구내에서 신제품 전동차를 끌고 가던 제7516호 견인기관차가 궤도를 이탈하여 경수선 상행선 가리봉-신도림 구간 철로가 17. 새벽까지 두절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상행선 전철이 전철궤도가 아닌 일반궤도로 임시운행하는 바람에 가리봉, 구로, 신도림역에서 정차하지 못해 이용 승객들이 영등포역까지 갔다가 다시 하행전철을 갈아타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26) 1995. 5. 17. 07:50경 국철 1호선 서울-용산역 구간 하행선에서 서울역을 출발하여 남영역으로 가던 에스 435호 전동차가 전력공급중단으로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서울역-구로 구간의 전동차 운행이 상행선은 10분, 하행선은 1시간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출근길 시민 5만명이 버스와 택시로 갈아타려고 혼잡을 빚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27) 1996. 1. 12.-13. 서울 창동역에서 출발하는 인천, 수원행 열차의 각 배차간격과 인천역과 수원역에서 각 출발하는 청량리행(성북 또는 의정부행 포함) 열차 외 각 배차간격을 가장 짧은 경우 40초(인천, 수원행)에서 긴 경우에는 9분 3초(청량리, 의정부행), 가장 긴 경우에는 16분 15초(인천, 수원행)까지 불규칙적이고 체계없이 운영함으로써, 1. 12. 18:00부터 19:30까지 사이에 운행된 열차 중 44.7퍼센트에 해당하는 열차가 국철 1호선의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 3분을 위반하여 운행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1. 13. 07:30부터 09:00까지 사이에는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열차가 이를 위반하여 운행하였습니다.

(28) 같은해 1. 27. 10:41경 경인선 온수-역곡역 구간에서 전력공급선이 느슨해지면서 서울을 출발하여 인천으로 운행중이던 제97호 전동차의 전차선과 합선을 일으키는 바람에 단전사고가 발생하여 하행선 구로-부평역 구간의 전동차 운행이 1시간 가량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고 전동차에 타고 있던 1천 5백여명이 온수역과 역곡역에서 모두 내려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느라 큰 혼잡을 빚었고, 서울에서 인천쪽으로 가던 10여대의 전동차가 연착하여 1만명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29) 1996. 2. 14. 10:35경 서울 구로역 구내에서 망우역을 출발하여 인천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피고 산하 철도청 소속 기관사인 소외 신진홍이 운전하는 제4745호 화물열차 18량 중 6량이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 관리를 소홀히 한 선로 및 궤도상태의 결함으로 인하여 탈선함으로써 인천행 국철은 배차간격이 10-15분으로 수원행 국철은 30분 이상으로 길어졌으며, 이 때문에 서울역 남영역 등 국철 1호선의 각 역에서는 열차들이 20-40분씩 지연 운행하였습니다.

(30) 1996. 1. 3.부터 1. 23.까지 19일간 출근시간대인 07:00-09:00과 퇴근시간대인 18:00-20:00에 국철 1호선이 지연운행된 시간은 총 9천 5백 56분으로 조사집계되었는 바, 그 원인은 전동차의 회차 및 운전정리 미숙 때문에 지연된 경우가 5천 3백 10분이었으며 시설고장 및 장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가 1천 1백 62분으로서 전체 지연시간의 3분의 2이상인 68퍼센트가 피고 산하 철도청의 업무미숙이나 시설관리소홀로 말미암아 열차가 지연 운행하였습니다.

(31) 같은해 3. 10. 12:17경 국철 1호선 청량리역 구내에서 성북역을 출발하여 구로역으로 운행 중이던 철도청 소속 소외 박정래가 운전하는 케이 123호 전동차가 고장을 일으켜 20여분간 전철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성북, 외정부 방면에서 도심과 인천, 수원으로 향하는 전동차 10여대가 잇따라 30여분씩 지연 운행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철도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자기의 경제적 부담에 의하여 사회공공의 복지와 증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국철 1호선의 제반 물적 시설과 피고 산하 철도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통하여 급부행정작용인 "공공시설이용역무(즉, 출퇴근 교통 서비스)"를 원고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운전정리 미숙과 노후된 철로나 궤도 또는 전력 공급선의 유지, 보수,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열차 탈선사고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국철 1호선의 운행을 지연 또는 불통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지연과 불통에 대한 안내방송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받음으로써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같은법 제5조 1항은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국철 1호선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영조물)의 관리 운영주체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열차의 지연 또는 불통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공공시설인 국철 1호선을 유지 보수 관리하면서 그 시설의 구조, 용도, 장소적 환경,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이를 불완전하게 유지 보수,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의 물적, 사회적, 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초래된 열차의 지연 또는 불통에 대하여,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철 1호선이 빈번히 지연운행되거나 운행 자체가 장시간 불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안내방송조차 제때에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데, 원고들의 나이,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각 금 6,000,000원이 적당하다 하겠습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입증자료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각 주민등록표 등본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각 재직증명서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각 신문기사
- 그 밖에 변론기일에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자료

1. 위 갑호증
1. 위임장

1. 날부서

1996. 3.

원고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 원 순

덕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성 호

변호사 이 석 연

서울지방법원 귀중